

(주)두산 공정거래 자율준수 행동규범

“공정거래 자율준수는 두산의 지속가능한 미래와 생존을 위한 절대적 원칙입니다”

(주)두산은 두산 Credo(정직과 투명성, 사회적 책임)를 바탕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고자 합니다. 공정거래 관련 법규 준수는 타협할 수 없는 경영의 최우선 가치이며, 어떠한 단기적 성과나 영업 이익도 준법보다 우선할 수 없습니다.

전 임직원은 본 행동규범을 철저히 숙지하고 실천해 주시기 바라며, 회사는 법 위반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(Zero Tolerance)으로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. 공정하고 존경받는 자랑스러운 두산을 만드는 데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.

(주)두산 대표이사 사장 유승우

제 1 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규범은 회사의 공정거래 자율준수 선언을 실천하고, 전 임직원이 일상 업무 및 의사결정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명확하고 구체적인 행동 기준과 판단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장 부당한 공동행위(담합) 근절

제2조(민감 정보교환 및 담합 금지)

- 경쟁사 임직원과의 접촉 시 가격, 생산·공급 수량, 거래 조건, 할인율, 원가, 입찰 정보 등 경쟁상 민감한 정보를 일체 교환하거나 공유·합의하지 않는다.
- 공공 및 민간 입찰 참여 시 사전에 경쟁사와 투찰 가격, 낙찰 예정자, 수주 물량 배분 등을 조율·합의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한다.

제3조(경쟁사 접촉 관리 및 보고 의무)

- 업무상 불가피하게 경쟁사 임직원과 회합·접촉(협회, 세미나, 모임 등 포함)한 경우,

접촉 일시, 장소, 참석자, 주요 대화 내용을 기록하여 자율준수관리자(또는 자율준수 주관부서)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.

제 3 장 공정한 대규모유통업 거래

제4조(판촉비용 부담 전가 금지)

- 유통업자 주도로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는 경우, 납품업자의 비용 부담 비율은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.
- 판촉행사를 진행하기 전에 행사 명칭, 기간, 소요 비용 및 부담 비율 등을 명시한 서면 약정을 반드시 사전에 체결하여야 한다.

제5조(경영정보 제공 요구 및 부당한 경영간섭 금지)

- 납품업자에게 타 거래처와의 공급·입점 조건, 원가 정보, 매출 마진 등 경영상 비밀 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.
- 납품업자의 임직원 선임·해임, 거래처 선택, 영업활동 등 독자적인 경영 활동에 부당하게 개입하거나 간섭하지 않는다.

제6조(부당한 경제적 이익 수취 금지)

-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광고비, 진열비, 판촉비, 정보처리비, 협찬금 등 명목을 불문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거나 수취하지 않는다.
- 납품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상품권을 강매하거나 부당하게 다른 상품을 구매하도록 강제하지 않는다.

제 4 장 상생 하도급 거래의 투명성

제7조(서면 사전 발급 및 보존)

- 외주 협력업체(수급사업자)에 제조·수리·건설·용역 등을 위탁하는 경우, 작업 착수 전에 하도급대금, 위탁 내용, 지급 방법, 납기 등이 명시된 법정 서면을 반드시 발급·교부한다.

제8조(부당한 대금 결정·감액 금지 및 연동·조정 성실 협의)

-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를 강요하거나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하지 않는다.
- 법정 '하도급대금 연동제' 대상 거래에 대해 연동 계약을 성실히 체결하며,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이 있을 경우 성실히 협의한다.

제9조(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및 유용 근절)

- 외주 협력업체의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요구하거나 이를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해 유용하는 행위를 일체 금지한다.
- 정당한 사유로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도 요구 목적, 비밀유지 방법, 권리귀속 관계, 대가, 자료 보유 임직원 명단, 반환·폐기 기한 등이 기재된 법정 서면을 사전에 교부하고 합의를 거쳐야 한다.

제 5 장 계열사 간 거래 및 부당지원 예방

제10조(정상가격 기준 거래)

- 계열사로부터 물류, IT, 원자재 등의 용역·상품을 거래할 경우 객관적인 시가(정상가격)를 산정하여 독립된 제3자와의 거래와 동일한 공정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다.

제11조(내부거래 적정성 검토 및 절차 준수)

- 일정 규모 이상의 내부거래를 진행할 경우 거래의 사업상 필요성, 효율성 및 보안성을 면밀히 검토하고, 객관적인 비교 견적 및 법률 검토를 거친다.
- 법정 대규모 내부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절차를 철저히 이행한다.

제 6 장 투명하고 올바른 표시·광고

제12조(부당한 표시·광고 금지)

- 제품 및 서비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때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·과장 광고, 기만적 광고, 부당한 비교 광고, 비방 광고를 일체 하지 않는다.
- 광고에 표현되는 성능, 품질 등의 내용은 객관적·실증적 근거에 기반하여 작성한다.

제 7 장 위반 시 대응, 제보자 보호 및 제재

제13조(위반 사실의 신고 및 보고)

- 본 규범 또는 공정거래 법규 위반 사실을 인지하거나 위반을 강요받은 임직원은 사내 익명 제보 시스템, 전사 자율준수관리자(자율준수 주관부서) 또는 각 BG(U) 자율준수책임자에게 즉시 신고·보고하여야 한다.
- 각 BG(U) 자율준수책임자는 중대한 위반 사안이 접수된 경우 지체 없이 전사 자율준수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14조(제보자 보호 및 비밀보장)

- 회사는 제보자의 신원과 제보 내용을 철저히 비밀로 유지하며, 제보를 이유로 어떠한 인사상·신분상 불이익이나 차별 대우도 가하지 않는다.

제15조(엄정한 제재 조치)

- 이 규범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반한 임직원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 회부를 통해 견책, 감봉, 정직, 해고 등 사규에 따른 엄중한 징계 처분을 내린다.

[부 칙]

제1조(대내외 공표 및 보관) 이 규범은 전 임직원이 상시 열람할 수 있도록 사내 인트라넷 및 포탈에 게시하고, 회사 공식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하여 외부 이해관계자에게 공표한다.

[실무 점검] 공정거래 준수 체크리스트 (Do's & Don'ts)

구분	반드시 지켜야 할 일 (DO)	절대 해서는 안 될 일 (DON'T)
경쟁사 관계	접촉 후 자율준수관리자(주관부서)에 일시·참석자·대화 내용 즉시 보고	입찰 가격, 수량, 낙찰 예정자 사전 협의 및 민감 정보 교환(담합)
대규모 유통업	판촉행사 전 비용 부담 비율(납품업자 50% 이하) 명시한 서면 약정 사전 체결	판촉비용 50% 초과 전가, 원가·마진 등 경영정보 요구, 광고비·협찬금 등 부당 수취
협력사 하도급	작업 착수 전 법정 하도급 계약 서면 사전 발급·교부	- 구두 발주 및 착수 후 지연 발급 - 일방적 단가 인하 및 부당 감액 - 사전 서면 없는 기술자료 요구 및 무단 유용
계열사 거래	- 정상가격(시가) 조사 및 객관적 비교 검토 수행 - 법정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절차 준수	불리한 조건 감수 또는 객관적 검토 없는 무조건적 내부 수익계약
표시 및 광고	객관적·실증적 데이터에 근거한 사실 위주의 정확한 정보 제공	성능·품질에 대한 거짓·과장 광고, 실증 없는 비교 및 비방 광고